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7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황 희·김태년·박용갑

신영대 • 이용선 • 안규백

김병주 · 한민수 · 이건태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 정보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3조의3(항공기 이력관리 및 정보 공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구입연도, 운항기록 및 사고이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이력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6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제1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이력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6. 제1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이력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3조의3(항공기 이력관리 및
	정보 공개) ① 항공운송사업자
	는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항공기의 구입연도, 운항
	기록 및 사고이력 등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항공기 이력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u>한다.</u>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이력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제133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항공기 이력정보를 공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u>한 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생 덕 <u><신 설></u>

⑥ · ⑦ (생 략)

(5)	_	_	 	 	_	 _	 - —	 	-	-	_
		_	 	 	_	 _	 - —	 	-	_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이력을 작성·관리하 지 아니한 자
- ⑥ · ⑦ (현행과 같음)